

2024년 제11차 이사회 회의록

- ☐ 일시 : 2024. 12. 30.(월) 16:00
- ☐ 장소 : T&S빌딩 5층, 필다현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2024년 제11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소집 통보일 : 2024. 12. 20.	
이사 정수 : 8인	재적이사 : 8인
감사 정수 : 2인	재적감사 : 2인

1. 일시 : 2024년 12월 30일(월) 16:00~18:40

2. 장소 : T&S빌딩 5층, 필다헌(서울 중구 서애로 33)

3. 임원 참석 현황

- 참석 이사 : 김종철, 김동건, 김호정, 박정운, 양인집, 이돈구, 최맹호
- 불참 이사 : 문휘창
- 참석 감사 : 배한영, 장혜윤
- 불참 감사 : 없음

4. 안건

가. 심의안건

- (1)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제 개편(안)
- (2)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서울 강남구 소재 토지) 처분(안)
- (3)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 (4)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 (5)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임시 상여금(명절 특별격려금) 지급(안)
- (6)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상여금 및 정근수당 규정 개정(안)
- (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직제 규정 개정(안)
- (8)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 (9)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총원 계획(안)
- (10)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처분(안)
- (11) 한국외국어대학교 2024회계연도 제2차추가경정예산(안)

간인(서명)	김종철	박정운	이돈구
--------	-----	-----	-----

- (12) 한국외국어대학교 송도캠퍼스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서 변경 제출(안)
- (13)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상자 선임(안)

나. 보고사항

- (1) 수익용 기본재산(강원 평창군 소재 토지) 매입 경과 및 계획 보고

5.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김종철 의장(이사장)이 성원 보고를 요청하다.
- 이어 박정식 처장이 재적이사 8인 중 7인 참석으로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에 의거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원 되었음을 보고하다.
- 이어 김종철 의장이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2024년 제11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6. 전회 이사회 회의록 승인

- 김종철 의장이 전회 회의록 보고를 요청하자, 박정식 처장이 보고한 후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전회 회의록을 승인하다.

7. 회의내용

가. 심의안건

(1)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제 개편(안)

- 김종철 의장 : 제1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최형용 기획조정처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제 개편 사항으로 교양교육과정을 주관하는 '미네르바교양대학' 을 '미네르바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양교육과정, 기초교육과정 및 양 캠퍼스 자유전공학부를 주관하는 캠퍼스 통합 단과대학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독립학부인 양 캠퍼스 자유전공학부는 '미네르바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함.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이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안건 제1호의 원안 승인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7인 전원이 찬성하여 승인·의결하다.

간인(서명)	김종철	최형용	한정우
--------	-----	-----	-----

□ 학제 개편 승인사항

가.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교양대학 -영어대학 -서양어대학 ... -AI융합대학 -국제학부 ... -자유전공학부(서울)	[글로벌캠퍼스] -미네르바 교양대학 -인문대학 -통번역대학 ... -AI융합대학 -바이오메디컬공학부 ... -자유전공학부(글로벌)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교양대학~~ -영어대학 -서양어대학 ... -AI융합대학 -미네르바대학 ↳자유전공학부(서울) -국제학부 ... ~~-자유전공학부(서울)~~	[글로벌캠퍼스] ~~-미네르바 교양대학~~ -인문대학 -통번역대학 ... -AI융합대학 -미네르바대학 ↳자유전공학부(글로벌) -바이오메디컬공학부 ... ~~-자유전공학부(글로벌)~~

나. 변경일 : 2025년 3월 1일 시행

(2)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서울 강남구 소재 토지) 처분(안)

- 김종철 의장 : 제2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이돈구 이사(건설위원장) : 건설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학교 원안과 같이 교육용 토지 중 일부만 분할해서 매각하게 되면 교육용 잔여토지 및 수익용 토지까지 사용상 제약이 발생하므로 일괄 매각이 아닌 분할 매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음.
- 최형용 기획조정처장 : 강남구 세곡동 산50-13외 2필지(임야)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비오톱 1등급 구역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개발할 수 없는 지역임. 이에 따라 교육 용도의 고유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등산로 협의매수 면적 28,421㎡(약 8,597평)을 강남구청에 12억5천만원에 매각하고자 함을 설명함. 이번 협의매수를 통해 매각을 진행하면 추후 다른 산책로까지 추가로 매각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2031년 이후 잔여 토지를 모두 매각할 수 있는 가점을 부여

간인(서명)	김종철	이돈구	최형용
--------	-----	-----	-----

받게 됨.

○ 이에 대해 이사들이 다음과 같이 토의함.

- 비오톱 1등급 지역이지만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고 주민들의 등산로 이용으로 이미 많이 훼손된 상태이므로 향후에는 토지 용도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것임.
- 서울시에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 등산로를 매입하고자 한다면 일부가 아닌 등산로 전부를 매입해야 함. 학교법인 토지 중 일부만 매각하면 잔여 토지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됨.
- 서울시의 2031년 이후 매입 계획은 현재로서는 신뢰할 수 없고, 추후에 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는 것임.
- 학교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매각을 보류해도 되겠지만, 신설학과 투자, 건물 리모델링, 교직원 채용 등을 하지 못하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또한 2019년 회계부분 교육부 감사에서 교육용 기본재산을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음으로 납부하고 있는 재산세에 대하여 「교육용 기본재산(토지) 관리 부적정」으로 경고를 받았고 해당 토지에 대하여 교육용으로 활용하거나, 교육용으로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매각하여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라는 통보를 받은바 있음. 교육용 기본재산 매도(안) 최종 부결로 인한 매도 불가 시 강남구청에서 등기이전요구 소송 가능성도 있음.
- 대학 사정은 이해는 되지만,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향후 10년 이후 상황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에 매각보다는 보유하는 것이 좋겠음.
- 대학 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학교 재산 관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존하면 향후 더 큰 재산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 일부 매각하는 것에 반대함.

○ 김종철 의장 : 심의안건 제2호 교육용 토지 매각은 이사들 대부분이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였기에 부결 처리하겠음을 묻자, 이에 참석이사 7인 전원이 동의하여 부결하기로 의결하다.

간인(서명)	김종철	이정호	이정호
--------	-----	-----	-----

(3)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 김종철 의장 : 제3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 요청함.
- 최맹호 이사(인사위원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사항에 대한 인사소위원회 검토 결과를 보고함.
 - 투어리즘 & 웰니스학부는 1순위를 우선 임용하되, 1순위 임용 불가시 2순위자 임용 요청에 대해서는 전공분야 등을 고려해 볼 때 2순위를 임용하는 것보다는 재공고를 통해 충원하도록 권고함.
 - 는 필수연구업적(SCI급 논문)에 대해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했기에 현 규정에 따라 조건부로 재임용을 승인함. 다만, 이후에는 게재예정증명서를 통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주문.
 - HK관련 연구소는 외부수탁 연구비가 매년 지급되는데, 이러한 HK연구비가 개인 연구비 실적으로 산정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제도 개선 요청
 - 외국인 교수 재임용에 관해 필요성, 타당성 등 이유를 소명하도록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하지 않은 학과가 다수 있음. 심지어 재임용 계약기간을 2년 내지 3년 요청하면서도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음. 개선을 재차 요청함.
 -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기에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실제 게재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제청하기 바람.
 - 고속승진, 조기정년보장 제도는 연구력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제도이나, 관련 제도를 도입한 시점과 현재의 연구 여건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현 상황에 맞춰 제도를 정비할 필요 있음.
- 유덕근 교무처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2025학년도 제1학기 교원 임용사항으로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고속승진, 조기정년보장, 해임, 석좌교수 임용 사항에 대하여 각각 보고함. 인사소위원회에서 지적된 연구실적이 미충족된 외국인교원에 대한 각 학과의 임용 소명서, 외부수탁 연구비 산정 등에 대해 설명함.

간인(서명)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	-----	-----	-----

○ 이어 임원들이 다음과 같이 토의함.

- HK연구소의 경우 외부 수탁 연구비가 이미 확정된 것임에도, 매년 연구소 또는 학과 소속 교수들이 1/n로 연구비 실적을 산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선 검토 요청함.
- 외국인교원 재임용 규정을 수차례 보완하도록 요구했음에도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정량평가를 70점이상 획득하면 정성평가에서 0점을 부여받더라도 재임용 될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각 평가항목의 비율 조정 등 합리적 개선이 필요함. 이번 외국인교원 재임용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을 지적하자면
은 논문실적 요건이 미충족된 상태에서 재임용 제청되었는데, 현 규정에 따르면 재임용 될 수 없는 규정 위반 상태임. 그럼에도 재임용이 불가피하다면 재임용 절차가 아닌 신규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규정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함. 현재 규정에는 예외 조항이 없으므로 규정 위반 외국인교원 재임용에 대한 처리 문제를 논의해야 함.
- 이사회는 외국인교원 재임용에 있어 논문실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규정 위반에 대한 재임용을 승인할 것인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서 재임용 불가로 처리하고 신규임용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결론을 내야 함.
- 현실적으로 규정 위반 외국인교원 전원에 대해 신규임용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며, 해당 인원이 모두 재임용이 되지 않는 경우는 학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번에 한하여 재임용을 승인해주면 다음 학기부터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음.
- 외국인교원 중 연구 실적이 전무한 경우도 다수 있는데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엄격히 적용해야 함. 현 규정대로 처리하기를 희망하며, 규정 위반의 재임용 승인에는 반대함.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교원 재임용이 계속되면 한국외대의 대학 랭킹이 하락하게 되는 요인이 되므로, 논문실적 요건 미충족 외국인교원에 대한 재임용에 반대 의견을 제

간인(서명)	김정현	정은	이한영
--------	-----	----	-----

출함.

- 규정 위반 재임용에 대한 반대 의견 및 개선 필요성에 공감함. 다만, 현 시점에 재임용을 불허하면 강의 배정이 되지 않아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재임용을 승인하되, 다음 학기부터는 규정 위반의 재임용은 불허한다는 내용을 각 학과에 통지하기 바람.
- 외국인교원 중에서 회화강의 교수는 연구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승인해주면 각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정을 개정하는 등 개선 조치를 하겠음.
- 이번에 한하여 규정 위반 외국인교원 재임용을 승인하되, 해당 학과들로부터 다음 학기부터 규정에 따른 재임용 기준을 준수하여 연구실적 미충족 교원에 대해서는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등의 약속서를 제출받도록 제안함.

○ 김종철 의장 : 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교원 임용사항 중 외국인교원 재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임용사항은 이사들의 의견이 일치되므로 다음과 같이 승인하겠음을 문자, 참석이사 7인 전원찬성으로 승인·의결하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승인사항

(가) 신규임용 : 수정 승인

- 수정사항 : 투어리즘 & 웰니스학부의 1순위 임용 불가시 2순위자 임용 요청에 대해서는 1순위만 임용하도록 승인함.

(나) 재임용(내국인) : 원안 승인

(다) 승진임용 : 수정 승인

- 수정사항 : 승진 제외

(라) 고속승진 : 원안 승인

(마) 조기정년보장 : 원안 승인

(바) 해임 : 원안 승인

(사) 석좌교수 임용 : 원안 승인

○ 김종철 의장 : 외국인교원 재임용의 경우, 논문 실적 미충족자의 재임용은 규정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다만, 재임용이 아닌 신규임용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은 학사행정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학교측 의견을 고려하여

간인(서명)	김종철	박정수	MF49
--------	-----	-----	------

이번에 한하여 재임용을 승인하기로 하되, 해당 학과들로부터 규정 준수에 대한 확약서 징구를 조건으로 승인하겠음을 제안하자, 이에 대해 이사들이 투표한 결과, 참석이사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양인집 이사)으로 외국인교원 재임용을 승인·의결하다.

□ 외국인교원 재임용 승인사항

- 승인 여부 : 조건부 승인
- 투표 결과 : 찬성 6인, 반대 1인(양인집 이사)
- 승인 조건 : 논문실적 요건 미충족 외국인교원의 재임용은 규정 위반임을 분명히 하며, 다만, 신규임용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은 학사행정에 어려움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승인함. 아울러, 해당 학과들로부터 다음 학기부터 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실적 요건 미충족 외국인 교원은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받기로 함.

* 붙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승인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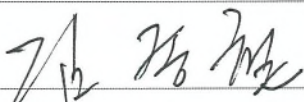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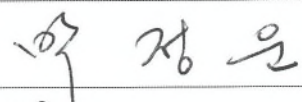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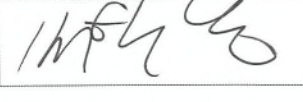
(4)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김종철 의장 : 제4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유덕근 교무처장 : 자유전공학부 학생 지도 및 상담을 위한 학생지도중심교수 트랙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과거에 폐지된 학술지원교수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학생지도중심교수는 학생 지도 및 상담을 주요 임무로 하고, 최초임용 3년, 재임용 3년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 , 필요시 보직 임명도 가능함.
- 김종철 의장 : 심의안건 제4호의 원안 승인을 묻자, 이에 참석이사 7인 전원 찬성하여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규정 개정 승인사항

- 승인여부 : 원안 의결
- 시 행 일 :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

붙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신·구 대비표

간인(서명)			
--------	---	--	---

(5) 사이버한국외어대학교 교직원 임시 상여금(명절 특별 격려금) 지급(안)

- 김종철 의장 : 제5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최서연 기획처장 : 대학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치하하고,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통해 대학발전을 지속 유도하고자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함. 주요 성과로는 2007년 이후 16년만에 입학정원 150명 증원, CUFS20(제2교사) 준공을 통한 안정적인 임대수입 확보, 사이버대학 최초 일반대학원 설치 인가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성과급으로
성과급으로 지급하고자 함을
설명하고 승인을 요청함.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후, 보수 규정에 반영되어 있는 용어 중 “봉급”은 현재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므로 추후에 다른 적절한 용어로 전환하도록 검토 요청함.
- 김종철 의장 : 심의안건 제5호의 원안 승인을 묻자, 이에 참석이사 7인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 임시 상여금(명절 특별 격려금) 지급 승인사항

(가) 적용 대상

- 내국인 전임교원 (특성화트랙 교육·학생지도중점교수 제외)
- 정규직 직원(육아휴직자, 계약직 제외)

(나) 지급 조건

- 교원 :
- 직원 :

(다) 지급 일자 : 2025년 1월 중 지급

(라) 소요 예산

간인(서명)	김종철	박정은	임태근 등
--------	-----	-----	-------

(6)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상여금 및 정근수당 규정 개정(안)

- 김종철 의장 : 제6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최서연 기획처장 : 임시상여금 지급에 대한 전결권 조정을 통해 법인 산하 대학의 동일 업무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고자 임시상여금 승인 권한을 기존 이사회 승인에서 이사장 승인으로 변경하고자 함.
- 김종철 의장 : 심의안건 제6호의 원안 승인을 묻자, 이에 참석이사 7인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 상여금 및 정근수당 규정 개정 승인사항

- (가) 승인여부 : 원안 승인
- (나) 시 행 일 : 2024.12.30.

* 붙임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상여금 및 정근수당 규정 신·구 대비표

(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직제 규정 개정(안)

- 김종철 의장 : 제7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하다.
- 최서연 기획처장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2025학년도 제1학기에 일반대학원이 개원 예정이므로 대학원 행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우수 대학원생 유치 등을 위해 대학원 전담조직으로 '교학팀'을 신설하고자 함.
- 김종철 의장 : 심의안건 제7호의 원안 승인을 묻자, 이에 참석이사 7인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 직제규정 개정 승인사항

- (가) 승인여부 : 원안 승인
- (나) 시 행 일 : 2024.12.30.

* 붙임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직제 규정 신·구 대비표

(8)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 김종철 의장 : 제8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 요청함.

간인(서명)	김종철	최서연	이정우
--------	-----	-----	-----

- 최맹호 이사(인사위원장) : 인사소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결과, 학교 원안을 승인하기로 하였고, 다만,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권고하였음.
-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조건부로 재임용 승인함. 다만, 이후부터는 게재예정증명서를 인정하는 예외 조항을 삭제하도록 재임용, 승진 제도의 개선을 주문.
 - 외국인 교원은 1년씩 재임용하고 있는데, 고용안전성, 원활한 교과 운영 등을 위해서는 검증이 완료된 외국인 교원에 한해 다년간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주문.
 - 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과 외국인 교원은 필요점수 65점 대비 1점 높은 66점으로 평정되어 다른 외국인 교원에 비해 점수가 낮게 평가되었으므로 학과에서 재임용 필요성에 대한 소명 필요.
 - 외국인교원 재임용 평정표 중 “원어강의 수행력”은 평가항목으로는 적절치 않으므로 평정표 항목에 대한 점검 바람.
- 박헌일 교학처장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2025학년도 제1학기 교원 임용 사항으로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해임 등에 대하여 각각 보고함. 인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과 외국인교원 재임용 필요성에 대한 학과 소명서, 게재예정증명서 예외 인정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보고함.
- 김종철 의장 : 심의안건 제8호의 원안 승인을 묻자, 이에 참석이사 7인 전원 찬성하여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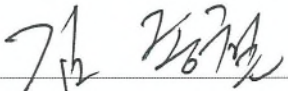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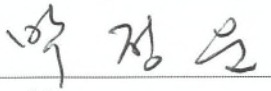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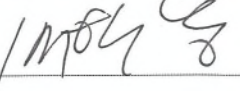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승인사항

- 승인 여부 : 원안 의결(불임, 승인 명단 참조)

* 불임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승인 명단

(9)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충원 계획(안)

- 김종철 의장 : 제9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하다.

간인(서명)			
--------	---	--	---

- 박헌일 교학처장 :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1인이 의원면직을 신청함에 따라, 결원 보충을 통한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영어학부에 특성화트랙 1명의 충원을 진행하고자 함.
- 김종철 의장 : 심의안건 제9호의 원안 승인을 묻자, 이에 참석이사 7인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충원 계획 승인사항

교원 종류	학부	충원 사항		초빙 분야	임용시기
		충원 구분	인원		
특성화트랙 (교육·학생지도중점 교수)	영어학부	신규충원	1명	영어교육	2025학년도 제1학기

(10)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처분(안)

- 김종철 의장 : 제10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박정식 재무처장 : 학교법인은 2024년 자금예산 편성 시 한국외국어대학교 송도캠퍼스 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전출금 예산액 10억원을 반영한 바 있음. 이에 따른 전출금 재원을 마련하고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정기예금 10억원을 처분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정부담금으로 전출하고자 함.
- 김종철 의장 : 심의안건 제10호의 원안 승인을 묻자, 이에 참석이사 7인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 붙임 : 수익용기본재산(예금) 처분 승인사항

(11) 한국외국어대학교 2024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김종철 의장 : 제11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함.
- 최형용 기획조정처장 :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세곡동 교육용 토지 매각을 전제로 매각 대금을 수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송도 공사비 4억6천5백만원을 지출예산으로 반영하는 등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였음. 그러나 이사

간인(서명)	김종철	박정식	최형용
--------	-----	-----	-----

회에서 세곡동 토지 매각이 부결되었기에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따라, 수입 예산으로 반영된 세곡동 토지 매각대금 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출 부분에는 송도캠퍼스 건설 공사비 465백만원 증액, 제세공과금 200백만원 감액, 보수 765백만원을 감액하는 등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함.

- 김종철 의장 : 학교에서 제출된 2024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승인하겠음을 묻자, 참석이사 7인 전원이 찬성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의결하다.

□ 2024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사항

(가) 승인 여부 : 학교 원안 승인

(나) 제2차 추가경정예산 승인 내역

수입		지출	
고정자산매각 수입	토지 -500백만원	고정자산매입 지출	건설중인자산 +465백만원
		관리운영비	제세공과금 -200백만원
		보수	-765백만원
합계	-500백만원	합계	-500백만원

(12) 한국외국어대학교 송도캠퍼스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서 변경 제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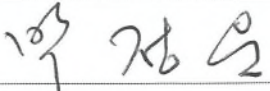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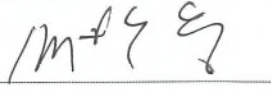
- 김종철 의장 : 제12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 요청함.
- 최형용 기획조정처장 : 현재 송도캠퍼스 2단계 건설공사는 골조공사 약60% 진행 중이며, 2025년 1월말경 골조공사 완료, 2025년 8월 2단계 전체공사 완료 예정임. 교육부의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외부 컨설팅을 통해 법인의 건축비 재정부담 확약 수준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였고, 개교 후 편제완성 기간을 포함한 운영초기 적자분을 법인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여 송도캠퍼스 교육여건에 영향이 없도록 하였음. 학과 구성(안)은 글로벌바이오&비즈니스 융합학부로하여 학부 정원 30명과 외국인자유전공학부 정원 외로 70명을 편성하여 편제 정원 400명 규모로 확정하였으며, 대학원 관련

간인(서명)	김종철	박정호	김영준
--------	-----	-----	-----

사항은 위치 변경 승인 이후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었음. 학교는 위치변경계획서를 확정된 이후 대학평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대학평의위원회는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보고안건으로 논의되었음을 보고함.

○ 이어 임원들이 다음과 같이 토의함.

- 학교에서 보완한 위치변경계획서에 대해 대학평의위원회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로 심의를 거부하고 있음. 위치변경계획서의 조속한 교육부 제출을 위해서 금회 이사회에서 먼저 승인한 후 대학평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제안함.
- 송도캠퍼스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빨리 이전해야 하는 시각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학교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학과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바이오 같은 영역은 연구개발, 기자재 등이 많이 필요하여 학교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일 수 있음.
- 일반적인 바이오 분야, 생명공학 등은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분야가 맞지만, 바이오비즈니스 같은 분야는 바이오 기초 정도만 실습하면 되고, 비즈니스 영역은 비교적 적은 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임. 기존 서울 및 글로벌 캠퍼스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법인에서 송도캠퍼스에 재정 지원하도록 약속했으므로 조속히 결론 내리고 교육부에 제출해야 함.
- 송도캠퍼스는 학교법인의 상당한 재정 투입이 예상되므로 재정적자가 최소화되도록 재정, 인사 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총장의 협조와 행정적 절차를 거쳐 법령에 따른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총장을 통해 운영되는 것임.
- 송도캠퍼스를 처음 추진했던 사람들과 달리 시간이 많이 지난 현재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여러 사정상 송도캠퍼스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법인은 학교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대해 총장과 집행부의 협조가 원활히 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보완·변경된 위치변경계획서가 교육부에 제출되기를 희망함.

간인(서명)			
--------	---	--	---

- 교육부의 보완 요청 이후,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므로 송도캠퍼스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위치변경계획서를 우선 승인하고, 이후 대학평의회 심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제안함.

○ 김종철 의장 : 이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안건 제12호에 대해 원안 승인하겠음을 문자, 참석이사 7인 전원 찬성으로 승인·의결하다.

□ 송도캠퍼스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서 변경 제출(안) 승인사항

- 승인 여부 : 원안 승인

- 부가 조건 : 대학평의회 심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심의 완료 즉시 위치변경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함.

* 붙임 : 송도캠퍼스 위치변경계획 신청서 변경 주요 내용

(13)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상자 선임(안)

○ 김종철 의장 : 제13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사회 회의록 서명의 간소화를 위해 간서명 대상자로 김종철 이사장, 박정운 이사, 배한영 감사를 선임하겠음을 발의하자, 참석이사 7인 전원 찬성으로 승인·의결하다.

나. 보고사항

(1) 수익용 기본재산(강원 평창군 소재 토지) 매입 경과 및 계획 보고

○ 김종철 의장 : 보고사항 제1호에 대하여 보고 요청함.

○ 박정식 재무처장 : 학교법인에서 교육 및 연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원도 평창군 산302번지(외 9필지) 일대의 군유지 매입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진행 경과 및 투자 계획 등을 보고함.

○ 김종철 의장 : 투자 방향 및 투자시기 등이 정해지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겠음을 설명함.

간인(서명)	김종철	박정식	배한영
--------	-----	-----	-----

○ 이어 김종철 의장이 2024년 제11차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2024년 12월 30일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사장	김 종 철	(서명) 김종철
	이 사	김 동 건	(서명) 김동건
	이 사	김 호 정	(서명) 김호정
	이 사	문 휘 창	(서명) 문휘창
	이 사	박 정 운	(서명) 박정운
	이 사	양 인 집	(서명) 양인집
	이 사	이 돈 구	(서명) 이돈구
	이 사	최 맹 호	(서명) 최맹호
	감 사	배 한 영	(서명) 배한영
	감 사	장 혜 윤	(서명) 장혜윤

간인(서명)	김종철	박정운	양인집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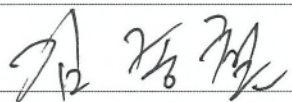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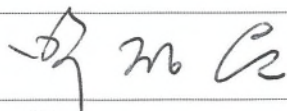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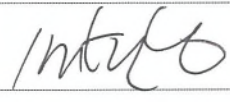
(붙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승인 명단

1. 신규임용

2. 재임용

가. 정년트랙(내국인교원)

간인(서명)			
--------	---	--	---

나. 특성화트랙(내국인교원)

간인(서명)	김정현	이정현	이정현
--------	-----	-----	-----

다. 외국인교원

간인(서명)	김정진	홍기	이민하
--------	-----	----	-----

간인(서명)

김정현

김민준

김민준

3. 승진임용

가. 내국인교원

나. 외국인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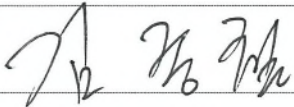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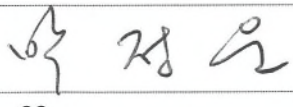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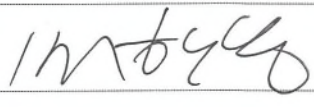
간인(서명)	김정철	박재우	이한우
--------	-----	-----	-----

4. 고속승진

5. 조기정년보장

6. 해임

가. 내국인교원

간인(서명)			
--------	---	--	---

나. 외국인교원

7. 석좌교수 임용

가. 신규임용

나. 재임용

다. 해임

간인(서명)	김정철	박정우	12694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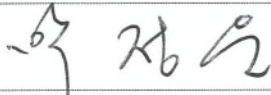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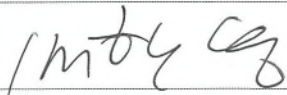
(붙임)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신·구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제2조 (교원의 종류)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에는 <u>학술지원교수</u> ,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중심교수, 강의중심교수, 특임교수를 둔다.	제2조 (교원의 종류)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u>학술지원교수</u> ,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중심교수, 강의중심교수, 특임교수, <u>학생지도중심교수</u> 로 구분한다.	트랙 삭제, 트랙 신설
제3조 (자격 및 직급) ① <u>학술지원교수</u> , 연구중심교수, 강의중심교수, 특임교수는 박사학위소지자로서 학문 및 연구 또는 교육 내용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생략) ③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직급은 조교수로 한다. 단, <u>학술지원교수</u> , 특임교수는 조교수 및 부교수로 한다.	제3조 (자격 및 직급) ① <u>학술지원교수</u> , 연구중심교수, 강의중심교수, 특임교수, <u>학생지도중심교수</u> 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학문 및 연구 또는 교육 내용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직급은 조교수로 한다. 단, <u>학술지원교수</u> , 특임교수는 조교수 및 부교수로 한다.	트랙 삭제, 트랙 신설
제4조 (계약기간 및 재임용)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계약기간은 각 호와 같이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 1. <u>학술지원교수</u> , 연구중심교수, 강의중심교수 : 2년 2. 산학협력중점교수 : 최초 3년, 이후 2년 3. 특임교수 : 1년 (신설) ② (생략)	제4조 (계약기간 및 재임용)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계약기간은 각 호와 같이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 1. <u>학술지원교수</u> , 연구중심교수, 강의중심교수 : 2년 2. 산학협력중점교수 : 최초 3년, 이후 2년 3. 특임교수 : 1년 4. <u>학생지도중심교수 : 3년</u> ② (현행과 같음)	트랙 삭제, 트랙 신설
제5조 (승진 및 승급) ① 승진은 <u>학술지원교수</u> 와 특임교수만 할 수 있다. ② 승진대상자는 교원인사규정 제18조에서 정한 직급별 승진 소요 연한에 달한 교원으로 한다. ③ <u>승급은 학술지원교수만 할 수 있으며, 승급에 관한 사항은 '교원 승진·승급 및 재임용규정'을 준용한다.</u>	제5조 (승진 및 승급) ① 승진은 <u>학술지원교수</u> 와 특임교수만 할 수 있다. ② 승진대상자는 교원인사규정 제18조에서 정한 직급별 승진 소요 연한에 달한 교원으로 한다. ③ <u>승급은 학술지원교수만 할 수 있으며, 승급에 관한 사항은 '교원 승진·승급 및 재임용규정'을 준용한다.</u>	트랙 삭제

간인(서명)	김정현	이정호	한정호
--------	-----	-----	-----

현행	개정	비고
제7조 (심사기준)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의 심사기준은 <별표 1>, <별표 2>, <별표 2-1>과 같다.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물 배점기준은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 제3조 연구업적 인정 점수표를 준용하며 심사기준은 최초 임용 시 본인의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임교수 승진 및 재임용 심사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심사기준)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의 심사기준은 <별표 1>, <별표 2>, <별표 2-1>과 같다.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물 배점기준은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 제3조 연구업적 인정 점수표를 준용하며 심사기준은 최초 임용 시 본인의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임교수 승진 및 재임용 심사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1 삭제, 별표 2 수정
제10조 (처우) ①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의 보수 및 기본시수는 별도로 정한 본 대학교와의 계약에 의한다. ②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학과(부), 단과대학(원) 및 전체교수회의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③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보직임명, 교원연구년, 직급수당, 고속승진 및 조기정년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처우 및 권한) ①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중심교수, 강의중심교수, 학생지도중심교수의 보수 및 기본시수는 보수규정 및 복무규정을 따르며, 특임교수의 경우는 별도 계약을 따른다. ②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보직임명, 교원연구년, 직급수당, 고속승진 및 조기정년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직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학과(부), 단과대학(원) 및 전체교수회의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단, 학과(부)장 보직 수행 시 학과(부), 단과대학(원)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구 수정 단서 추가 단서 추가
(신 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간인(서명)			
--------	---	--	---

현행					개정	비고																							
<별표 1> 학술지원교수 승진 심사기준					(삭 제)	<별표 1> 삭제																							
<table><tr><th>구 분</th><th colspan="4">부교수 승진 심사기준</th></tr><tr><td>계열</td><td>인문계</td><td>사회·상경계</td><td>법학계</td><td>이공계</td></tr><tr><td>승진 소요기간</td><td colspan="4">6년</td></tr><tr><td>연구점수</td><td colspan="4">연 240 × 조교수 직급 재직 기간</td></tr><tr><td>필수연구 업적</td><td>연평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 중 A&HCI 또는 SCOPUS 1.2편 포함]</td><td>연평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 중 SSCI 또는 SCOPUS 1.5편 포함]</td><td>연평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 중 SSCI 또는 SCOPUS 1.2편 포함]</td><td>계약기간 중 SCI 또는 SCIE 9.6편</td></tr></table>							구 분	부교수 승진 심사기준				계열	인문계	사회·상경계	법학계	이공계	승진 소요기간	6년				연구점수	연 240 × 조교수 직급 재직 기간				필수연구 업적	연평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 중 A&HCI 또는 SCOPUS 1.2편 포함]	연평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 중 SSCI 또는 SCOPUS 1.5편 포함]
구 분	부교수 승진 심사기준																												
계열	인문계	사회·상경계	법학계	이공계																									
승진 소요기간	6년																												
연구점수	연 240 × 조교수 직급 재직 기간																												
필수연구 업적	연평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 중 A&HCI 또는 SCOPUS 1.2편 포함]	연평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 중 SSCI 또는 SCOPUS 1.5편 포함]	연평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해당직급 재임기간 중 SSCI 또는 SCOPUS 1.2편 포함]	계약기간 중 SCI 또는 SCIE 9.6편																									
○특기사항 * 공동연구는 인정비율을 적용하되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10%추가 가 산한다. *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이상’이란 국제저명전문학술지, 국외일반 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를 의미한다. * 국제저명전문학술지(SCOPUS 제외) 교차 게재시, 계열별 국제저명전문 학술지 논문 요구량 대비 백분율(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로 인정한다. * 논문편수 산정에서 수학·통계학과(수학교육전공 포함) SCI(E) 실적은 1.5배 (150%) 가중치를 적용한다. * 논문편수 산정에서 산업경영공학과 SCI(E) 실적은 1.3배(130%) 가중치를 적용한다. * 논문편수 산정에서 SSCI Top40% 1.2배, SCI(Top10% 1.5배, Top40% 1.1배) 가중치를 적용한다. - SCI급 저널 Top%는 미국 Thomson社가 1년마다 발표하는 Impact Factor의 상위%로, 당해연도를 평가한 Impact Factor가 없는 경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동일 논문에 대한 교원업적평가 점수와 승진 심사점수는 상이할 수 있음) * 국제저명전문학술지는 A&HCI, SSCI, SCI(E), SCOPUS(Article, Article-in Press, Review 형식의 Document Type만 인정)를 의미하며, SCOPUS 인정 편수는 Article을 기준으로 하고 Article-in Press, Review 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배점으로 산정한다. * 게재가 확정된 연구물은 공식적인 게재예정증명서 제출시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 단, 승진임용일 이전에 학술지에 게재된 최종 연구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연구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국제저명전문학술지에 게재된 최종연구물의 경우는 승진임용일 전에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승진임용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연구실적 최종연구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승진임용일에 소급 하여 승진임용이 취소됨					(삭 제)	특기사항 삭제																							

간인(서명)	김정현	이재우	이정우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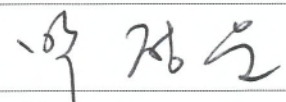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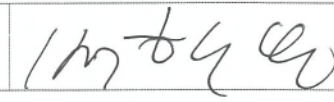
현행					개정	비고																									
<별표 2> 재임용 심사기준 ① 학술지원교수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 colspan="4">학술지원교수 재임용 심사기준</th> </tr> <tr> <td>계열</td> <td>인문계</td> <td>사회·상경계</td> <td>법학계</td> <td>이공계</td> </tr> <tr> <td>재임용 소요기간</td> <td colspan="4">2년</td> </tr> <tr> <td>연구점수</td> <td colspan="4">연 240 × 계약기간</td> </tr> <tr> <td>필수연구 업적</td> <td>연평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계약기간 중 A&HCI 또는 SCOPUS 0.2편 포함]</td> <td>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 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계약기간 중 SSCI 또는 SCOPUS 0.25편 포함]</td> <td>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 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계약기간 중 SSCI 또는 SCOPUS 0.2편 포함]</td> <td>계약기간 중 SCI 또는 SCIE 1.6편</td> </tr> </table>					구 분	학술지원교수 재임용 심사기준				계열	인문계	사회·상경계	법학계	이공계	재임용 소요기간	2년				연구점수	연 240 × 계약기간				필수연구 업적	연평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계약기간 중 A&HCI 또는 SCOPUS 0.2편 포함]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 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계약기간 중 SSCI 또는 SCOPUS 0.25편 포함]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 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계약기간 중 SSCI 또는 SCOPUS 0.2편 포함]	계약기간 중 SCI 또는 SCIE 1.6편	<별표 2> 재임용 심사기준 ① (삭제)	학술지원교수 삭제
구 분	학술지원교수 재임용 심사기준																														
계열	인문계	사회·상경계	법학계	이공계																											
재임용 소요기간	2년																														
연구점수	연 240 × 계약기간																														
필수연구 업적	연평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계약기간 중 A&HCI 또는 SCOPUS 0.2편 포함]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 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계약기간 중 SSCI 또는 SCOPUS 0.25편 포함]	연평균 한국연구재단등 재학술지 이상 120점 [단, 계약기간 중 SSCI 또는 SCOPUS 0.2편 포함]	계약기간 중 SCI 또는 SCIE 1.6편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간인(서명)	김정현	박재우	이현영
--------	-----	-----	-----

(붙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상여금 및 정근수당 규정 신 · 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제1조 (생 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 (지급회수) ① (생 략) ② 총장은 법인 <u>이사회</u> 의 승인을 받아 교직원에게 임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 (지급회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총장은 법인 <u>이사장</u> 의 승인을 받아 교직원에게 임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구수정
제3조 ~ 제8조 (생 략)	제3조 ~ 제8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신 설>	부 칙 (8) (시행일) 이 규정은 <u>2024년 12월 30일</u> 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신설

간인(서명)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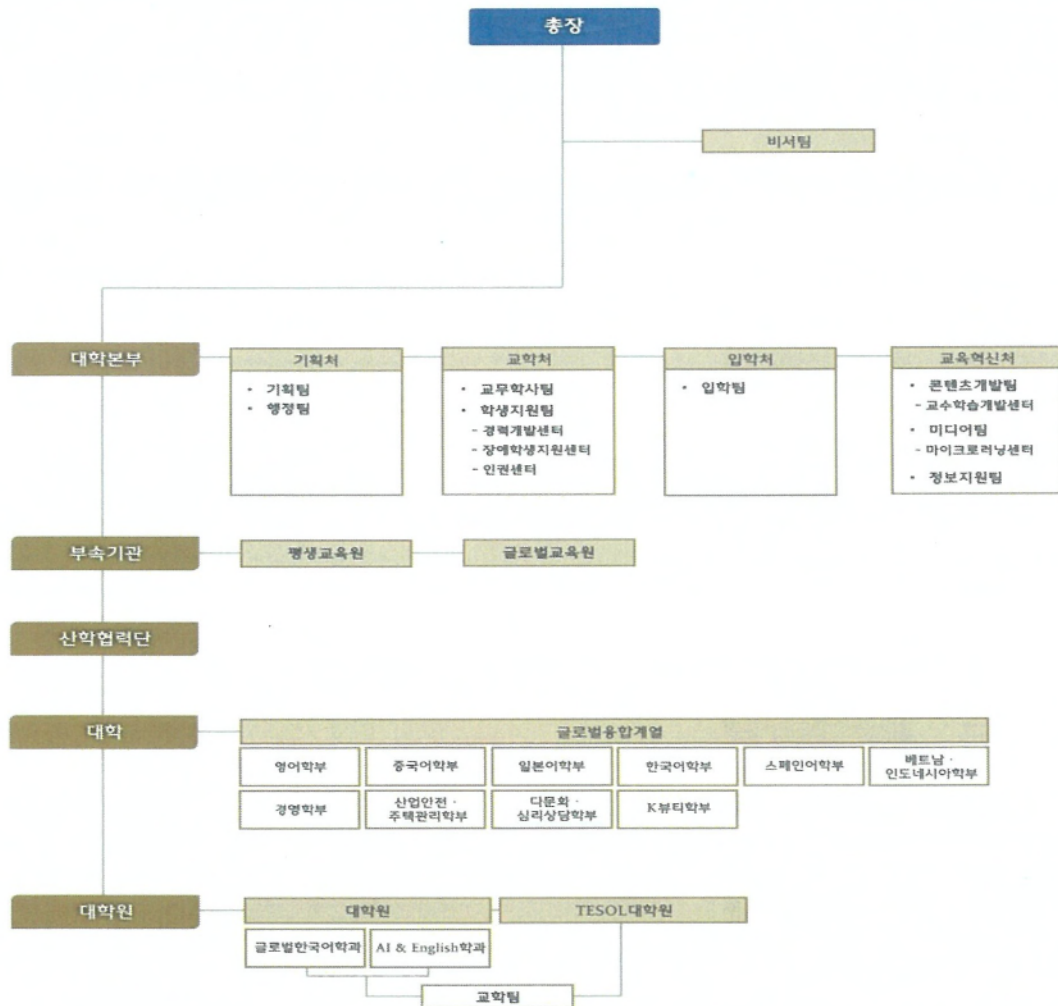
(붙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직제 규정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제1조, 제2조 (생략)	제1조,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 (조직) 본 대학교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조직) 본 대학교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변경
제4조, 제5조 (생략)	제4조,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 (대학원) 본 대학교에 TESOL대학원을 둔다.	제6조 (대학원) 본 대학교에 <u>대학원</u> , TESOL대학원을 둔다.	자구 수정
제7조 ~ 제17조 (생략)	제7조 ~ 제17조 (현행과 같음)	
제18조 (TESOL대학원) TESOL대학원에 교학팀을 둘 수 있다.	제18조 (<u>대학원</u>) <u>대학원</u> 에 교학팀을 둔다.	자구 수정
제19조 ~ 제24조 (생략)	제19조 ~ 제24조 (현행과 같음)	
	부 칙 (14)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신설

간인(서명)	김기정	이재은	한기영
--------	-----	-----	-----

<별표 1> 기구표 (개정)



간인(서명)	김정철	이재호	한영호
--------	-----	-----	-----

(붙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승인 명단

1. 내국인 신규임용

2. 내국인 전임교원 승진

3. 내국인 전임교원 재임용

가. 정년트랙

나. 특성화트랙

간인(서명)	김정현	박재호	최영호
--------	-----	-----	-----

4. 외국인 전임교원 재임용

5. 해임

간인(서명)	김정철	이재호	이수영
--------	-----	-----	-----

(붙임)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처분 승인사항

1. 처분대상 재산 : 수익용 기본재산 정기예금 중 1,000,000,000원을 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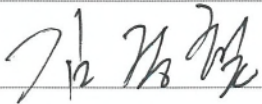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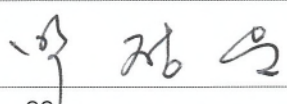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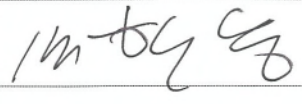
(금액단위 : 원)

구분	계좌번호	보유금액 (원금기준)	처분액	처분후 잔액	비고
정기예금 (우리은행)			589,085,234		
정기예금 (국민은행)			410,914,766		
합계			1,000,000,000		

2. 처분용도 :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정부담금으로 10억원 전액 전출함.

3. 처 분 일 : 교육부 승인 후 즉시 처분.

4. 처분사유 : 학교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익용기본재산(예금) 10억원을 처분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정부담금(사학연금법인부담금)으로 전출하고자 함.

간인(서명)			
--------	---	--	---

(붙임)

한국외국어대학교 송도캠퍼스 위치변경계획 신청서 변경 주요 내용

가. 재정지원 계획 변경사항 : 법인의 재정지원 계획 구체화

(1) 교육부 요구사항(재정 관련)

- 자금조달 계획서 정교화, 구체화 필요
- 이전 이후 학교 안착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계획 필요

(2) 교육부 제출 수정 보완 사항 : 법인의 재정부담 확약 수준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

- ① 법인의 재정지원 계획 : 부지조성비, 2차 건축비 관련 차입금 원리금을 법인에게서 부담
- ② 법정부담금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법인수익사업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가능 금액 65억 중 기존 법정부담금 부담분 대학 30억을 제외한 전입금으로 송도캠퍼스 지원 예정
- ③ 개교 후 편제완성기간을 포함한 운영초기 적자 분을 법인에서 지원함을 명시하여 기존캠퍼스 교육여건에 영향이 없도록 함

나. 교육프로그램 변경사항 : 학과 구성 변경과 교육프로그램 계획 구체화

(1) 캠퍼스 특성화 및 학과 구성 관련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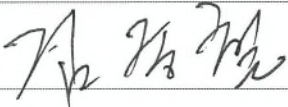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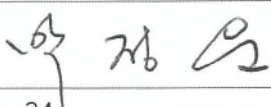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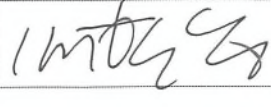
- 지역특화 중심의 송도캠퍼스 학과 구성
- 기존캠퍼스 교육여건 등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
- 정원 조정의 수월성 등을 고려

(2) 학과 구성 변경안

- 글로벌바이오&비즈니스융합학부(정원 30명)
- 외국인자유전공학부(정원외)

구분	세부내용		비고
	정원내	정원외	
정원	학부 30명 (편제정원 120명)	정원외 70명 (편제정원 280명)	• 교육부 인가를 위한 최소 규모 (편제정원 400명 규모) • 타캠퍼스 영향 최소화 • 기건설 중인 건축규모 고려
교육과정	• (송도 2~3년, 의무이수) 기초교양 + 전공 • (서울/글로벌) 지역 및 언어관련 이중/부전공	• (송도 2~3년, 의무이수) 기초교양 + 한국어/한국학 • (서울/글로벌) 이중전공 및 부전공	• 캠퍼스 규모 고려 • 외국인유학생 선호도 고려

정원조정 • 글로벌캠퍼스 자유전공학부 정원 30명 이전

간인(서명)			
--------	---	--	---